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도산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II. 검토의견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은 정)